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0

발의연월일: 2020. 7. 9.

발 의 자:서범수・박덕흠・태영호

김희곤 · 안병길 · 박수영

권명호ㆍ이 영ㆍ신원식

강민국 • 박성민 • 정동만

백종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정활동비 등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 는 사례가 있음.

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·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,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,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 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) ①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 (이하 이 조에서 "의정활동비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구속 중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정활동비등은 이 법 시행 이후의구속기간에 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3조의2(의정활동비 등의 지급
	제한) ① 지방의회의원이 형사
	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
	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,
	여비, 월정수당(이하 이 조에서
	"의정활동비등"이라 한다)을 지
	급하지 아니한다.
	②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
	하여 무죄, 면소, 공소기각의
	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
	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
	<u>니한 의정활동비등에 법정이율</u>
	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
	한다.